

총여학생회 회칙

전문

인류역사가 발전해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언제나 교육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순종만을 최고의 미덕이라 가르쳤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된 채 여성에게 가해진 성차별, 성폭력은 묻혀졌다. 하지만 하늘의 절반 여성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사회의 주인으로 서기위해 쉼없는 투쟁을 해왔다.

80년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던 청년학생들의 튼튼한 기상으로 총여학생회는 힘있게 건설되었다. 학내의 비민주적인 문제들, 제국주의 침략 속에서 겪어야 했던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서린 고통,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미군범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여성민중들, 이 모든 문제들을 투쟁으로써 풀어 나가는 구심에 총여학생회는 존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제반의 모순을 타파해 내고 한반도 청년학생으로서 가지는 특수성을 여학우의 정서에 맞게 실현시키고 학원 내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아울러 기층 민중, 제반 사회단체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여성해방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제3조(설치)

본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모든 여학생으로 한다.

제5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여학생 총회를 통해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6항.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7조(본회의 임무)

1항.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임무를 지닌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활동에 대한 내, 외부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8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학생총회,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총여학생회 중앙 운영위원회,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 중앙집행부, 단과대 여학생회(부), 과여학생회(부)를 구성한다.

제9조(특별기구)

1항. 총여학생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항. 특별기구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총여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3장 여학생 총회

제10조(지위와 구성)

여학생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장)

여학생 총회는 총여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여학생회장 결위시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12조(권한)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생회원,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2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소집)

1항. 여학생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나. 재적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제14조(의결)

여학생 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4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제15조(위상과 지위)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여학생 총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2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 및 기본 방향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3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여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된 최고 운영기관이다.

제16조(목적)

본회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써 본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본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구성)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단과대 여학생회(부)장, 각과 여학생회(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과여학생회 혹은 과여학생부가 없을 경우 과운영위에서 여학생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18조(의장)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여학생회 회장 결위시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역할을 승계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1항.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

2항. 본회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3항.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4항.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의 사업에 관한 심사.

5항. 총여학생회 중앙 집행부장과 특별기구장의 일괄 인준.

6항. 여학생 총회 소집의결.

7항. 총여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8항. 회원 전체의 중요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9항. 기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소집)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정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와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를 둔다.

1항. 정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로 한다.

2항.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나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제21조(운영 및 의결)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은 의장이 한다.

(단, 결위시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역할을 승계한다.)

2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개최는 개최일 2주전에 공고한다.

3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4항.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불참시 폐회하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5장 총여학생회 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

제22조(지위)

1항. 총여학생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총회 및 확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총여학생회 내의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3항. 총여학생회 회장은 본회의 특별기구를 관할한다.

4항. 총여학생회장은 본회와 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 광주 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남여대협)의 중앙운영위원,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남총련)의 대의원,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의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5항. 총여학생회 부회장은 총여학생회장의 결위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결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권한 행사가 못할 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이 결위되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고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항. 중앙집행부의 각 부장과 특별기구의 장을 임

명 해임할 수 있다.

2항.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단,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 발의할 수 있다.)

3항. 총여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항. 여학생 총회,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여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항. 여학생회와 여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기구를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6항. 기타 총여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4조(임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로 한다.

제25조(안건 상정 및 채택)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 1/5이상의 연서, 그리고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시 대의원의 요청에 의해 상정할 수 있다.

2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 채택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시 출석 대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26조(이견서 제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견서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이견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자료집에 수록한다.

제27조(의무)

총여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쳐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제6장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제28조(지위)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인 확대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기관이다.

제29조(구성)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각 단과대 여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1항. 총여학생회 사업 전반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2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3항. 중앙집행부의 각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항.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5항.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발의할 수 있다.

6항. 총여학생회장이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제31조(소집)

1항. 정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2조(의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을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중앙집행부

제33조(지위)

중앙집행부는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4조(업무 및 권한)

1항.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2항. 총여학생회 일반 사업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각 부의 부장은 집행부 세로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4항. 총여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부원을 둘 수 있다.

5항.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구성)

중앙집행부는 총무부, 학원자주화 사업 추진부, 학술부, 선전부, 대학문화부, 연대사업부로 구성한다.

제36조(역할)

총무부- 총여학생회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학원자주화 추진 사업부- 학원 내외의 역할과 간

섭을 배제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학원의 진정한 자주화와 여학생회원의 권리를 보좌하기 위함.

학술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선전부- 총여학생회 정책과 노선의 선전에 관한 사항.

대학문화부- 학내의 올바른 문화형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연대사업부- 학생과 기층 민중과의 연대에 관한 사항.

제37조(임기)

중앙집행부장과 부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8조(임명절차)

집행부원은 집행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여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장 단과대학 여학생회(부) 및 과여학생회(부)

제1절 단과대학 여학생회(부)

제38조(지위)

단과대학 여학생회는 단과대학 여학생을 대표하는 특별 자치 조직이다.

(단. 단과대학에 여학생회가 없는 경우 당해 단과 학생회에서 여학생부장을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집행부서로 구성한다.)

제39조(구성)

단과대학 여학생회는 단과대학 여학생 총회, 단과대학 여학생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여학생 집행부를 둔다.

제40조(단과대학 여학생회(부)장)

단과대학 여학생회(부)장은 단과대학 여학생회를 대표하여 남여대협 대의원, 총학생회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단, 단과대학 여학생부장은 총학생회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아니다.

제41조(회칙)

단과대학 여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학 여학생회칙에 따른다.

제2절 과 여학생회(부)

제42조(지위)

과 여학생회(부)는 학과의 특별자치 조직이다.

제43조(구성)

과 여학생회(부)는 각 과의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44조(지위)

과 여학생회(부)장은 과 여학생들을 대표하여 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소속 단과대학 여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제45조(업무 및 권한)

과 여학생회(부)는 소속 단과대학 여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 과 여학생회(부)의 자치 활동을 수행한다.

제46조(회칙)

과 여학생회(부)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4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 학생회비 중 지급되는 예산과 기타 보조비로 한다.

제48조(회계연도)

1항. 본 회의 회계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2항. 전 항의 회계연도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49조(예산편성)

1항.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고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항. (가예산)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준에 한해 총학생회장의 승인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여 한다.

제51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총여학생회의 각 부서에서 보고 된 결산안을 총여학생회장이 제출한다.

제9장 선거

제52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에 한한다.

제5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1항.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자격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교에서 4학기 이상등록을 따른다.
필하고, 현재 재학 중인 자.

-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54조(선거시기)

각급 정, 부회장 선거는 임기완료 3개월 전에 실시 한다.

제55조(선거방법)

1항. 본 회의 정 · 부회장 선출 방법은 보통 · 직접 · 평등 · 비밀 선거에 의한다.

2항. 단일후보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제56조(임기)

당선인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7조(선거관리)

총여학생회 정 ·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58조(보궐선거)

1항. 본 회의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위되어 그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 대행한다.)

2항.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회장의 추천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59조(선거규약)

선거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며, 선거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제10장 회칙개정

제60조 (발의)

1항.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2/3이상 발의.

2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3항. 회원 1/20이상의 발의

제61조(의결 공포)

발의시 총여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